

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				
검사접수번호		접수일자		검사일자
검사 신청인	성명(상호 및 대표자)			
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		
음주운전 방지장치 제원명	장치등록(고유)번호			
	제조사		모델명	
	제어장치 일련번호		음주측정부 일련번호	
장치부착 자동차등	자동차등 등록번호		차명	
	형식 및 연식(모델연도)		운행용도	
	차대번호		소유자명 (전화:)	
검사구분	[] 정상 작동여부 검사 [] 재검사			
검사결과	☐ 장치등록 일치성 결여 (해당모델, 번호불일치) ☐ 외관검사 미충족 (음주측정부 및 제어장치의 변경 흔적 존재, 최초설치상태와 상이점 발견) ☐ 측정결과값 오류 (기준 불만족 등) ☐ 운행기록 정상 저장 불만족 (기록 부재 및 일부 누락발견) ☐ 기타 중대한 시동잠금 제한기능의 오류 존재 ☐ 운전자 호흡 채취 시 사용자 얼굴인식 등 촬영 오류		최종판정	[] 적 합 [] 부적합
「도로교통법」 제50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. ※비고 : “부적합”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관련 조치 후 아래 통지일 기준 10일 이내로 재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취인				